

달라지는 제도

• • • • •

새해부터 달리지는 중소기업관련 경제 및 노동제도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대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Primary-CBO에 대한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회생가능 기업 등에 대해 대출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CLO)를 통하여 신규자금 등을 지원한다.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에 회사채 만기도래가 집중되어 적기자금지원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흡수

-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80%는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차환발행을 지원

- 우선 산업은행이 해당 회사채를 전액 인수

- 산은인수분 중 7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회사채담보부증권(CBO)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에 순차적으로 분할·편입

- 산은인수분 중 20%는 해당기업의 채권은행들이 만기도래회사채 보유규모 및 대출금 등을 감안하여 재인수하고, 10%는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

-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결재,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등을 위해 신용보증공급을 대폭 확충할 예정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발행제도 시행

주채권은행이 구성한 대출pool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CLO(대출채권 담보부 증권)를 통해 부분보증함으로써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 대출pool에 포함된 대출을 유동화 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 SPC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부분보증을 하며, 부분보증비율은 현재의 Primary CBO 보증비율에 준하여 충분히 공급

- ABS는 선순위채 95%, 후순위채 5% 구성으로 발행하고 이를 주채권은행이 전액 인수하여 주채권은행은 인수한 후순위채의 일정 부분을 대출pool에 참여한 기업에 인수토록 권고할 수 있음

※ 대출pool에 포함되는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선정하는 BBB이하 기업(전체 pool의 95% 이상)에 해당

※ 대출 pool에 포함되는 대출은 신규자금 대출에 한정

☞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부분보증 CLO는 은행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달라지는 제도

• • • •

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회사체 발행능력이 없는 기업까지도 혜택을 받게 되어 자금사정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회생 가능하다고 판정된 235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분보증 CLO를 통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해당기업의 자금경색이 해소되고 경영 정상화가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됨

•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1,678.5 원)가 최저임금으로 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포함)

※ 4인이하 사업장은 2000. 11. 24일부터 적용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요건 강화

2001년 하반기부터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 | 주식회사 | 소기업 |
|-----|---------|---------|
| 발기인 | 3인 이상 | 1인 이상 |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따라서 소기업은 발기인 1인이상이면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 소기업 : 광업·제조업·운송업의 경우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다만, 장애인, 수습근로자, 훈련생,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최저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예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 (예 : 연월차·유급휴가·유급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 및 수당 (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 임금 효력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

2000. 11. 24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2000. 9. 1~2001. 8. 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865원, 일급(8시간 기준) 14,920원, 월환산액(223시간 기준) 421,490원이다.